

별첨

아이에스동서(주)

「협력사 행동강령 및 규범」



▶ 아이에스동서 협력사 직무수행원칙(행동강령)

“아이에스동서는 모든 사업 영역에서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노동권 및 인권</b>
협력사는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한다. 또한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별 법규에 정해진 근로 연령, 근로시간, 임금,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 등을 준수해야 한다.
<b>안전/보건</b>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의 산업안전을 위하여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이에 따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장비를 제공하여 위험 인자에 대하여 노출을 피해야 한다. 또한 비상대책과 대응절차를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모든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설비에 대한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b>환경</b>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 인허가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하고 당사의 환경/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운영에 따른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전 과정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 및 폐수, 대기오염 물질 등은 관련법을 준수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사용 절감에 힘써야 하며, 제품 함유 물질 규제 관련법 및 규정, 고객 요구사항 일체를 준수하여야 한다.
<b>윤리</b>
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거래 관계에 있어 자유경쟁 추구, 모든 영업활동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하며, 당사와의 모든 거래가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협력사와의 상생도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거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i>당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상기 내용을 준수 및 준수 여부를 평가받을 의무가 있으며, 본 내용은 글로벌 거래환경에 맞추어 변경될 수 있다.</i>

## ▶ 아이에스동서 협력사 행동규범

### 1. 개요

#### 가. 목적 및 대상

이에스동서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협력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수립을 통해 아이에스동서와 협력사가 윤리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상호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동반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스동서의 협력사 행동규범은 전 협력사에게 기업 경영 및 사업 운영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노동/인권, 환경,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윤리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 관행의 내용으로 합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협약, UNGC 원칙 등을 지지하고 국내 노동 및 산업안전, 환경보건 관련 법령을 등을 참조하였으며, 법규 및 정책에 따른 기준 변경 등으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아이에스동서의 직접 및 간접 협력사 모두를 포함하며, 모든 협력사는 거래업체 등을 대상으로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나. 협력사 책임과 역할

이에스동서의 모든 협력사는 사업 운영 및 경영에서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이에스동서 및 아이에스동서의 위탁을 받은 제 3 자 기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의 행동규범 준수 여부를 점검 및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스동서는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아이에스동서는 협력사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스동서는 모든 거래 체결 시, 협력사에 본 행동규범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을 준수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아이에스동서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 노동권 및 인권

협력사는 국가, 사회, 기업 모두가 인권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모든 구성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도적 대우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업 활동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권보호 원칙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1) 강제노동 금지 및 근로시간 준수

협력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 근로(모든 비자발적 근로 포함)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법으로 규정된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 2) 아동노동 금지 및 연소자 보호

협력사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15 세 미만) 및 각국 법령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을 준수하고, 18 세 미만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3) 공정한 채용

협력사는 근로자 채용 시 지원자의 기술, 능력 및 적성을 판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용해야 하며, 채용과정에서 뇌물,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근로자 채용 시 고용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 4)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노동관계법에 따른 정당한 임금(최저 임금, 초과 근로수당, 법정 복리후생 항목 등 포함)을 보장하고 이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 명세 및 고용 조건 관련 정보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과 적절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 5)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사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할 수 있는 권리와 단체교섭 및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6) 인권침해 및 차별 금지

협력사는 근로자의 인종, 성별, 연령, 국적, 종교, 장애, 정치적 견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해고, 근로조건 등의 대우에서 불법적인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7)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력, 체벌, 학대, 폭언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3. 안전/보건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업무상 모든 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보장이 필수적인 사항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1) 안전관리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잠재적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실시,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 2) 사고/재해 대응 체계

협력사는 자연재해,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갖추어야 하며, 법적 기준에 맞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비상사태 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3) 보건 및 위생 관리

협력사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위생적인 근로환경과 부대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건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 체계와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해야 합니다.

### 4. 환경

협력사는 사업 수행 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환경법규 준수

협력사는 환경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와 등록사항을 취득하고 유지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 2)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사용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 3) 대기오염, 수자원, 폐기물,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 및 폐기물, 화학물질을 법적 기준 또는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안전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 4) 친환경 시공 및 생물 다양성

협력사는 건설과 제조 공정 전반에 환경영향 완화를 위한 친환경 제품 선정 및 공법을 우선 적용하고, 사업장 주변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 유지를 위해 환경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훼손 시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5. 윤리

아이에스동서는 모든 협력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윤리원칙을 준수하기를 바라며, 당사의 상생경영 방침과 공정거래 실천사항을 바탕으로 모든 거래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1)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 또는 제품/서비스 정보와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해서는 안되며, 관련 법령 및 원칙에 의거하여 취득 정보를 보호 및 관리해야 합니다. 아이에스동서와 협력사의 지적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불법적·비윤리적으로 사용하거나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2) 부패 및 불공정 거래 방지

협력사는 임직원의 뇌물수수, 횡령, 청탁 등 청렴과 윤리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소속 근로자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 목적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패방지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제시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 3) 규범 준수

아이에스동서 또는 아이에스동서가 지정한 제 3자 검증기관이 진행하는 자가점검 또는 현장실사 시 본 행동규범 준수 여부 및 이행 수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본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적절한 문서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하며, 자가점검 또는 현장실사를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